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09호

건설신기술 지정

‘일방향 중공슬래브를 적용하여 골조 깊이 절감이 가능한 이중보 공법 (DBS JOIST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1)	법인명(성명)	(주)바로건설기술(서현주, 김영춘)		
	주 소	우05393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38길 9(성내동, 바로빌딩) 6층		
	전화번호	02-413-6503	팩스번호	02-566-6984
신청인(2)	법인명(성명)	(주)반도건설(이정렬)		
	주 소	우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12, 11층 허바허바빌딩		
	전화번호	02-3011-2700	팩스번호	02-3011-2797
신청인(3)	법인명(성명)	에이앤유씨엠건축사사무소(주)		
	주 소	우05839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52, 에이동 4층 409, 410, 411호		
	전화번호	02-2047-3000	팩스번호	02-2047-3708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975호

○ 명 칭 : 일방향 중공슬래브를 적용하여 골조 깊이 절감이 가능한 이중보 공법(DBS JOIST 공법)

○ 기술분야 : 건축 > 철근콘크리트 > 철근콘크리트 골조, 건축 > 철골 > 철골 가공 및 조립

○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기둥 위의 주두 양측면을 따라 보를 이중으로 구성하며, 보와 보 사이에는 일방향 중공슬래브를 기둥방향으로 적용하여 넓은 보를 형성하고, 넓은 보와 넓은 보 사이에는 보와 직각으로 일방향 중공슬래브를 적용하는 DBS Joist 공법으로, 보는 주두와 이중보의 효과로 높이가 낮아지고 슬래브는 중공체의 효과로 높이가 보와 차이가 크지 않아 철근콘크리트조에서는 보 측면거푸집이 없이 테이블폼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철골조에서는 철골의 하부 플랜지에 테크를 깔아 지하에서는 터파기 감소, 지상에서는 높은 공간의 사용이 가능한 구조 시스템이다.

○ 신기술의 범위

기둥 위의 주두 양측면을 따라 보를 이중으로 구성하며, 보와 보 사이에는 일방향 중공슬래브를 기둥방향으로 적용하여 넓은 보를 형성하고, 넓은 보와 넓은 보 사이에는 보와 직각으로 일방향 중공슬래브를 적용하는 DBS Joist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 해당없음

5. 기 타

○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